#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74

발의연월일: 2020. 9. 17.

발 의 자:정춘숙·김영진·김윤덕

김상희 • 윤후덕 • 고영인

아 김정호 · 박재호

조정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흉악하고 잔인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거지, 학교등 일부 장소에 한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 불과한 등성범죄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자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선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해 감경사유나 집행유예 등으로 쉽게 풀려나

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또 현행법상 성인에 대한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이라는 대상의 취약성, 특수성,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해,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주거, 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 등까지 포함해 1킬로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25조제3항 및 제41조제3호 등).

## 주요내용

- 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임(안 제7조제2항).
- 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으 로 하여금 조사나 심리·재판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 다.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 금지 거리를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유치원, 아

동 활동시설 등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장소와 거리를 확대함 (안 제41조제3호).

#### 법률 제 호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7년"으로 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나 심리·재판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위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제3호 중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를 "주거, 학교,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 등으로부터 1킬로미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생 략)	·강제추행 등) ① (현행과 같
	승)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	②
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5년</u> 이상의 유기징역	<u>7년</u>
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② (생 략)	배려)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u>따른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u>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나
	심리·재판에 참여하여 의사소
	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
	<u>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u>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ス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	
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	
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	
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	
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	
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	
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 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 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 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 4. 5. (생략)

세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1.・2. (현행과 같음)
3
주거, 학교, 유치원, 아동 활
동시설 등으로부터 1킬로미터
4.•5. (현행과 같음)